

# 포 향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 739호      2009. 7. 28(화)

선	기    관    의    장
람	

## 포 향 시

- 시장지시사항..... 2
- ◀ 훈 령 ▶
-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지침(제215호) ..... 8
- ◀ 입법예고 ▶
- 포항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제2009-845호) ..... 19
-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제2009-847호) ..... 30
-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관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제2009-851호) ..... 33
- ◀ 고 시 ▶
- 포항 용흥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제2009-66호) ..... 45

회									
람									



관리 번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p>훈 시 (7. 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망근로사업 추진철저 및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일읍에서 실시한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잔디 식재를 하면서 참여자들과 어려움을 함께 하였음.</li> <li>- 간부공무원들도 한번쯤 희망근로사업을 손수 체험 할 수 있도록 하기바라며</li> <li>- 연일읍 잔디식재 희망근로사업장에 읍면동장들이 견학하여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바람.</li> </ul> </li>   <li>○ 체납세 징수 철저 등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li>   <li>○ 장기간 장마에 따른 벼 병충해 방제 철저</li>   <li>○ 추경예산 확보 및 설명자료 준비철저</li>   <li>○ 청하면 회계비리사건 마무리 및 소규모 공사 집행 대책 강구</li>   <li>○ 지곡성당 건립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현황을 보고바람.</li> </ul>	<p>전 부 서 (희망근로프로젝트추진TF팀) (자치행정과) (남,북구청)</p> <p>재정관리과</p> <p>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p> <p>기획예산과</p> <p>감사담당관실</p> <p>건 축 과 (남 구 청)</p>

관리 번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09-099	<p>○ 시 기념품 제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I 교체에 따라 우리시의 심벌과 상징물을 활용한 적정단가의 기념품(여성용, 넥타이 등)을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li> </ul>	자치행정과
'09-100	<p>○ 방학이용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학을 맞아 학생들을 이용한 불법주차계도, 쓰레기 분리수거 등 공익목적의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기 바람,</li> <li>-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로 무질서 행위 방지 및 근절에 대한 의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바람.</li> </ul>	새마을봉사와
'09-101	<p>○ 행사이후 조속한 평가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황리에 마친 국제불빛축제 행사에 대한 평가를 관련부서가 참여하여 조속히 실시하기 바람,</li> <li>- 이번 행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잘된 점 등을 철저히 분석 평가하여 내년에는 더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바람.</li> </ul>	문화관광과

관리 번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09-102	<p>○ 용선대회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년 처음 실시한 용선대회가 직장과 단체 등의 참여로 시민화합에 아주 적합한 스포츠임을 알 수 있었음.</li> <li>- 필요한 장비를 확충하여 직원들이 함께하는 국단 위 행사추진을 검토하기 바라며,</li> <li>- 영일만과 형산강 등 해양스포츠 여건을 잘 갖춘 우리지역에서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스포츠로 활성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람.</li> </ul>	체육지원과
'09-103	<p>○ 구룡포 일본인 생활상 동영상 제작 및 영일만 친구 일어판 제작홍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룡포 일본인 거주당시 생활상과 다양한 스토리를 당시 활동 인물인 서상호옹을 통해 동영상을 제작 일본관광객에게 시청 및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li> <li>- “돌아와요 부산항 “과 같이 ” 영일만 친구 “를 일본어로 번역하여 일본인에게 알려지도록 홍보하기 바람.</li> </ul>	문화관광과
'09-104	<p>○ 죽도시장 간판 일본어 표기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죽도시장 간판을 일본어 겸용 또는 한자를 포함한 제작으로 일본관광객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바람.</li> </ul>	경제통상과

관리 번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09-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관광객 유치전략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스코, 해병대, 포항지능로봇연구소 등을 묶으면 수학여행 관광상품으로 충분하다는 평가가 있음.</li> <li>- 경주시의 연간 일본학생 수학여행단 수를 확인하여 일본학생 수학여행 관광상품으로 개발검토 바람.</li> <li>- 일본 지역별로 민단소속 인원이 많으므로 현황을 파악하여 일본의 아줌마관광단을 유치하기 바람.</li> <li>-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MOU를 체결한 여행사에서 관광객 유치를 적극 홍보하도록 조치하고 확인 바람.</li> <li>- 한일친선협회, 재일평통자문회의 등 민간교류협의체를 포함하여 활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적극 추진하기 바람.</li> </ul> </li> </ul>	일본T/F팀
09-1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관광객 유치를 위한 포항만의 음식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관광객 유치 먹거리 공략으로 포항만의 특색 있는 음식을 개발하기 바람,</li> <li>- 특히, 지역의 '가자미 밥식혜' 를 “포항김치” 로 명하여 일본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기 바람.</li> </ul> </li> </ul>	환경위생과 (일본T/F팀)

관리 번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09-1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을 위한 정기적 공연행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빛축제 M.net의 공연행사는 청소년들에게 대단한 호응과 열광을 일으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음.</li> <li>-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정기적인 공연행사를 추진하기 바람.</li> </ul> </li> </ul>	여성가족과
'09-1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가지내 담장 허물기 사업 등 잔디와 나무심기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가지 대로변에 설치된 담장(예 롯데백화점 맞은편 고려아파트 담장)이 도시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있음.</li> <li>- 대상지를 조사하여 담장허물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특히, 대나무 식재 등 녹지대 조성을 추진하여 도심에 잔디와 나무를 많이 심기 바람.</li> </ul> </li> </ul>	도시녹지과
'09-1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도공원 조명시설 설치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도공원이 전반적으로 “어둡다” 는 여론이므로 현장을 확인하고 실개천조성지역에 보안등의 확대설치를 검토하는 등 조명을 좀더 밝게 조치하기 바람.</li> </ul> </li> </ul>	공원관리사업소

**훈 령**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7월 28일

포항시 훈령 제 215 호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지침**

**제1장(목적)** 이 규정은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의하여 제정된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건물, 대단위 개발사업 허가(신고), 타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적용대상 및 범위)**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신고), 대단위개발사업 허가(신고), 타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원인자를 그 부과대상자로 한다.

**제3장(건축인·허가 협의)** ① 건축 인·허가(신고) 등으로 인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급수신청 시)방법과 시기를 다음과 같이한다.

- 1. 건축 인·허가(신고) 부서와 협의 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임을 통보(건축허가) 함
  - 2. 건물 준공 시 원인자부담금 완납증명서 제출 시 준공토록 함
- ② 기본적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한다.
- 1. 소수점 이하 절사 후 계산
  - 2. 절사 후 계산한 금액을 합하고, 천원 단위로 절사하여 부과
  - 3. 주차장(면적)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
  - 4. 복합용도의 경우 용도별로 계산 후 합산

**제4장(승계방법)** ① 원인자부담금 시행 전 공동주택의 재개발, 재건축시에는 납부한 시설분담금은 승계하지 아니한다.

- ② 원인자부담금 시행 전에 공동주택의 재개발, 재건축행위 없이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 하고자 할 때는 납부한 시설분담금은 승계한다.
- ③ 원인자부담금 시행일 이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건물의 원인자부담금은 승계한다.(재건축 등으로 인한 증가차액 납부)
- ④ 가설 건물의 원인자부담금은 승계한다.
- ⑤ 폐전된 급수시설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유로도 승계하지 아니한다.

**제5조(급수시설의 구경확장)** ① 구경 확장 시에는 확장구경의 공사비와 차액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단순 구경 확장 시에는 확장구경의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단순 구경 축소에는 축소구경의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건물 증설 및 용도변경)** ① 건물의 용도변경 등으로 물 사용량 감소 시 차액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② 건물 증설이나 용도변경 등으로 물 사용량 증가 시 추가분에 대하여는 차액을 부과한다.

③ 무허가 건물의 급수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 하나, 순수 주거시설로 2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건물 확인서 첨부 시 급수 신청 승인한다.

**제7조(공동주택 등의 세대분리)** ① 주거시설(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원룸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세대당(공동주택 포함)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 한다.

② 20세대 미만 공동주택(APT) 등, 단독주택(다가구주택-원룸)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신고 시에는 설치공사비와 세대당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상수도사용량에 대한 분리고지서 발급이 가능하다.

③ 공동주택(APT) 및 상가(APT 단지 내)에 세대별 계량기 설치 시에는 정액 공사비와 건축면적(상가 면적)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 시 상수도사용량에 대한 분리고지서 발급이 가능하다.(공동주택은 기존대로 시행)

**제8조(부담금 납부)** ① 급수신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 시기는 급수예정 15일 전까지 원인자부담금(급수공사비 제외)을 농협(농협중앙회)에 납부를 하여야 하며, 원인자부담금 납부액이 1억 이상일 경우에는 급수예정 15일 전까지 1차(50퍼센트), 2차(50퍼센트)로 분납 가능하며, 납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분납가능한 원인자부담금은 급수공사 시행 전까지 1차, 2차로 나눠서 납부 하여야 함
2. 1차, 2차로 분납가능한 원인자부담금을 2차에 전액 완납 시 급수공사 시행가능
3. 원인자부담금 미납에 따른 가산금은 없으나, 미납 시에는 급수공사 시행은 불가함

**제9조(대단위 개발사업허가 협의)** ① 조례 제4조 [별표 1]에 의한 대단위개발 사업 인·허가 시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다음의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 및 원인

자부담금 납부증명서를 첨부 후 대단개발사업 허가 및 준공토록 한다.

- 1. 사업 허가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작성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 첨부 후 허가
- 2. 사업 준공 시(급수신청 시)에는 원인자부담금 완납증명서를 첨부 후 준공
  - ② 개발사업시행자는 포항시 상수도사업소장과 [별지 제2호 서식] 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를 작성 후 각각 한부씩 보관한다.
  - ③ 개발사업시행자 변경, 개발사업 축소 또는 증가 시는 변경협약을 하여야 한다.
  - ④ 개발사업자 등이 직접 상수도시설물(배수관 등) 설치시는 상수도사업소에 중간 검사를 의뢰하고, 준공 검사 시 하자 발생이 없을 경우 상수도시설물을 이관한다.

**제10조(부담금 산정식)** ① 대단위개발사업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대단위개발사업자가 배수관 등을 설치시는  

$$[\text{단위사업비}(\text{총사업비}/\text{시설용량}) - \text{톤당 원인자부담금}] \times \text{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으로 부담금산정}$$
- 2. 대단위개발사업자가 배수관 등을 설치하지 않을시  

$$[\text{단위사업비}(\text{총사업비}/\text{시설용량})] \times \text{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사용량으로 부담금산정}$$
- 3. 수도시설 산증설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및 톤당 원인자부담금  
 (순자산/시설용량)단위단가는 매년 산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함

**제11조(징수처리 방법)** ①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거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대장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1. 수도시설 이설, 개조 시에는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 2. 대단위개발사업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 3. 건물 급수신청 시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 4. 손괴자부담금은 제외 함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5.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가산금액은 없으나 미납자 관리를 위한 공문 발송 및 직접방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

포항시 ○○구 ○○읍(면)·동 ○○리 번지일원 ○○○○사업의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거 원인을 제공한자에게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포항시상수도사업소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원인자(이하 “을” 이라 한다)와의 원인자 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상수도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원인을 제공한 “을” 이 부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시행)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는 수도법과 상수도시설기준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갑” 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

제3조(사업비의 투자) “갑” 은 원인자부담금 납부이전에 상수도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동 부담금 납부이후 적정시기에 동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① “을” 이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 부담금 및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다.

- 고시액 기준 : 협약일 기준 고시금액으로 납부(협약일 초과 후 납부 시는 당해 년도분)
- 계획 급수량 :           톤/일
- 부담 금액 :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톤당 원인자부담금(순자산/시설용량)  
                  × 계획 급수량(톤/일) =           천원

② “을” 은 원인자부담금을 포항시에 현금으로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분납수	부과시기	납부기한(납부일)	비율(%)	납부금액(천원)
1	개발계획 승인 후 사업착공 전	협약일로부터 6개월 ( 년 월 일 까지)	30	○○○
2		협약일로부터 12개월 ( 년 월 일 까지)	30	○○○
3		협약일로부터 18개월 ( 년 월 일 까지)	40	○○○

③ “을” 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갑” 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한다.

제5조(용수의 공급)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 체결된 시설 또는 사업(이하 “시설 등” 이라 한다)의 용수공급은 시설용량 증설사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되고 용수 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급수수용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시설로서 협약된 시설 등의 용수공급이 가능할 경우 증설사업완료 이전에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범위) ① 원인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은 취수장, 도수관로, 정수장, 배수지, 송·배수관로 등의 신설 또는 증설을 그 범위로 한다.

② 시설 등의 급수전 인입공사는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에 의거 급수공사 신청 및 공사비, 제수수료납부 등은 별도 시행한다.

제7조(자산의 귀속처리 및 운영관리) “을” 이 부담한 투자시설에 대하여는 준공과 함께 포항시 자산으로 귀속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본 협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국가시책 및 시 방침상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3. 기타 사정으로 “갑” 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경우

제9조(권리, 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 등이 타인에게 명의변경 된 경우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을” 및 “승계자” 는 “갑” 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이견 조정) 본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과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단,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을 때에는 “갑” 의 의견에 따른다.

제11조(증명)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 과 “을” 이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제12조(효력발생)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 번지(시청앞길100)

성 명 : 포항시상수도사업소장 (인)

“을” 주 소 : 포항시

상 호 : (인)

성 명 : (인)

[별지 제3호 서식]

원인자 (대단위개발사업) 부담금 부과·징수 대장

일련 번호	허가 위치	납부대상자		납 부 액									비고	
				합계	1차			2차			3차			
		금액	부과일		납부 확인	금액	부과일	납부 확인	금액	부과일	납부 확인			
			납기일				납기일			납기일				
		주소	업체명 (성명)											

**1. 제정이유**

수도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거 제정한 「포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업무를 처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건축허가(신고)시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 나. 원인자부담금의 승계
- 다. 건물증설 및 용도변경 시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 라. 공동주택 등의 세대 분리 시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방법
- 마. 대단위개발사업 시행 시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방법
- 바. 대단위개발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산정방법

# 입법예고

포항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09년 7월 24일

포항시 공고 제2009-845호

## 포항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도시브랜드 파워가 미래 경쟁력”이라는 전략 하에 포항시의 정체성 강화와 도시마케팅 전략을 위해 리뉴얼한 상징물(심벌마크, 도시 슬로건, 캐릭터)의 변

경과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기존 조례 개정부분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포항시 브랜드(CI) 리뉴얼 용역에 의거 개발한 포항시 심벌 마크, 도시 브랜드, 캐릭터 등의 상징물을 개정하고, 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함(안 제3조)
- 상징물 개정 조항 : **조례 제3조 제1호(별표1), 2호(별표2), 3호(별표3), 4호(별표4)**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8.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270-2156, FAX 270-2160)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포항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포항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 중** “포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를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은 이 조례에 의한 상징물로 본다.

[별표 1] 시기



1. 색상

● 바탕 : 백색

● Logo



2. 작도법

- 깃면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는 3:2의 비례로 한다.
- 기의 표준 규격은 가로 1,350mm, 세로 900mm로 한다.
- 도형은 포항시 이미지 통합 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작도하여 사용한다.
- 시기는 필요에 따라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작도상 비례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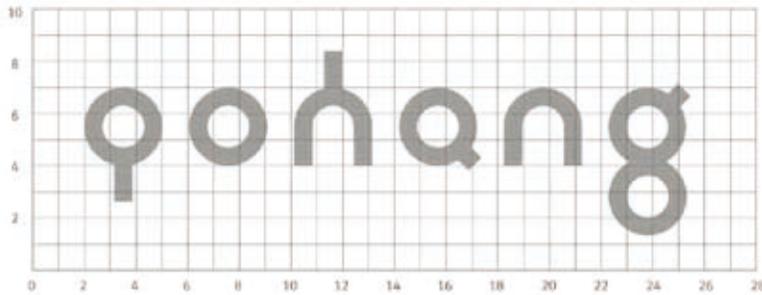


[별표 2] 심벌마크

1. 기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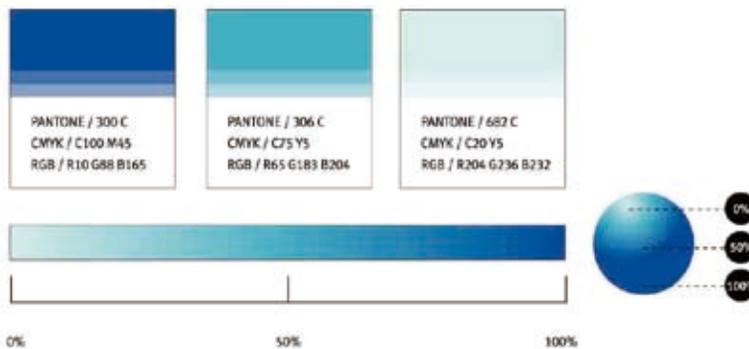
2. 그리드 시스템



3. 설명

국제교류와 해양문화의 중심도시, 포항시의 비전을 담아 영문명칭을 이용한 워드마크 형태로 개발함. 원형 그리드(grid)를 기본 모티브로 환동해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네트워크, 정보 문화의 교류를 표현하였으며, 풍성하고 다양한 시민의 문화적 삶과 자유와 활기가 넘치는 무한 가능성을 내포한 포항시의 이미지를 담아 독특한 서체로 개발됨

4. 색상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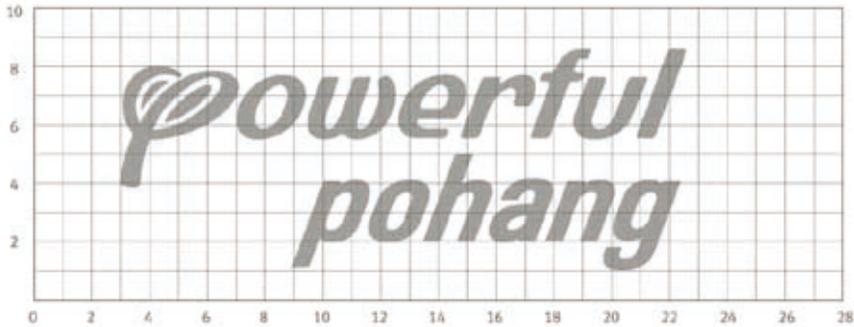


[별표 3] 도시브랜드

1. 기본형



2. 그리드 시스템



3. 설명

역동적인 포항시를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포항시가 되기 위한 염원을 담음.  
 이니셜 P를 이용하여 새싹과 하트모양으로 친근감있게 표현함으로써 즐거움과 행복함이 퍼져 나가는 포항시의 이미지를 담고 있음. 포항시민의 삶의 질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친근하게 리뉴얼하여 누구나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포항시의 희망을 담음.

4. 색상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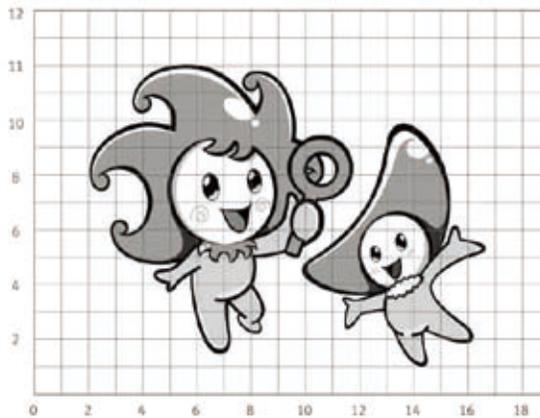


[별표 4] 캐릭터

1. 기본형



2. 그리드 시스템



3. 설명

해(연오)와 달(세오)을 상징하며, 포항의 정체성이 담긴 「연오랑 세오녀 설화」를 바탕으로 개발됨. 이는 빛과 희망을 상징하며 포항시의 활기, 즐거움, 자유, 희망, 열정은 레드 계열의 태양 캐릭터로, 첨단, 글로벌, 무한성장, 꿈, 에너지는 블루계열의 달 캐릭터로 표현함 한쌍의 캐릭터가 조화를 이루며 밝은 표정과 경쾌한 동작으로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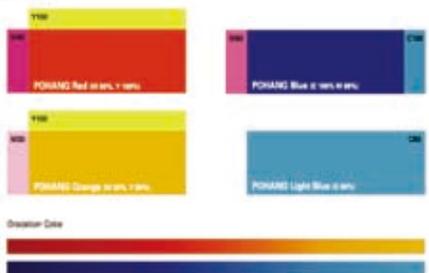
4. 색상규정

				
PANTONE / 2995 C CMYK / C90 M10 RGB / R28 G153 B196	PANTONE / 300 C CMYK / C100 M45 RGB / R10 G88 B165	PANTONE / 219 C CMYK / M90 RGB / R242 G30 B140	PANTONE / 130 C CMYK / M30 Y100 RGB / R255 G179	PANTONE / 711 C CMYK / M100 Y80 RGB / R252 B25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별표 1】</b></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시 기</p>  <p><b>1. 색 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탕 : 백색</li> <li>○ 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단 녹색 ㉔ : Pantone 368 CVC</li> <li>■ 하단 청색 ㉕ : Pantone 293 CVC</li> </ul> </li> <li>○ 로고 : 회색(Pantone 11 CVC)</li> </ul> <p>※ 정확한 것은 심벌마크 작도법 및 색상규정 활용</p> <p><b>2. 작도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깃면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는 3:2의 비례로 한다.</li> <li>○ 기의 표준 규격은 가로 1,350mm, 세로 900mm로 한다.</li> <li>○ 도형은 포항시 이미지 통합 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작도하여 사용한다.</li> <li>○ 시기는 필요에 따라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li> <li>○ 작도상 비례는 다음과 같다.</li> </ul> 	<p><b>【별표 1】</b></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시 기</p>  <p><b>1. 색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탕 : 백색</li> <li>● Log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antone 293 CVC</li> <li>■ Pantone 368 CVC</li> <li>■ Pantone 11 CVC</li> <li>■ Black</li> </ul> </li> </ul> <p><b>2. 작도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깃면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는 3:2의 비례로 한다.</li> <li>● 기의 표준 규격은 가로 1,350mm, 세로 900mm로 한다.</li> <li>● 도형은 포항시 이미지 통합 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작도하여 사용한다.</li> <li>● 시기는 필요에 따라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li> <li>● 작도상 비례는 다음과 같다.</li> </ul> 



현 행	개 정 안
<p><b>【별표 3】</b></p>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브랜드</p> <p>1. 기본형</p>  <p>2. 작도법</p>  <p>3. 설명</p> <p>오른 글자 세로 Powerful Pohang은 정사각 단위 100등분하여 세로줄 10개, 가로줄 10개씩 격자 노선을 표시한다.</p> <p>전체 부호를 정사각 단위 100개 격자, 가로 세로가 10씩 정사각 단위 10개씩, 정사각 단위 100개씩의 격자로 표시한다. 'POHANG'은 정사각 단위 100개씩의 격자로 표시한다. 'Powerful Pohang'은 정사각 단위 100개씩의 격자로 표시한다. 'POHANG'은 정사각 단위 100개씩의 격자로 표시한다. 'Powerful Pohang'은 정사각 단위 100개씩의 격자로 표시한다.</p> <p>4. 색상규정</p>  <p>5. 설명</p> <p>역동적인 포항시를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포항시가 되기 위한 열정을 담음. 이니셜 P를 이용하여 세계에 알려줌으로써 친근감있게 표현함으로써 즐거움과 행복함이 느껴지는 포항시의 이미지를 담고 있음. 포항시민의 삶과 직결된 행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친근하게 다듬어줌으로써 누구나 즐겁고 행복하게 버리는 포항시의 의미를 담음.</p>	<p><b>【별표 3】</b></p>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브랜드</p> <p>1. 기본형</p>  <p>2. 그리드 시스템</p>  <p>3. 설명</p> <p>역동적인 포항시를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포항시가 되기 위한 열정을 담음. 이니셜 P를 이용하여 세계에 알려줌으로써 친근감있게 표현함으로써 즐거움과 행복함이 느껴지는 포항시의 이미지를 담고 있음. 포항시민의 삶과 직결된 행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친근하게 다듬어줌으로써 누구나 즐겁고 행복하게 버리는 포항시의 의미를 담음.</p> <p>4. 색상규정</p>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09년 7월 24일

포항시 공고 제2009-847호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통합기금 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인 참여 확대

**2. 주요내용**

- 포항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 대행 변경 : 조례 제8조 제3항  
- 포항시시정조정위원회 ⇒ 포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7조**

-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8.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 (참조 : 기획예산과장 ☎ 270-2203, FAX 270-2160)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포항시시정조정위원회” 를 “포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조례는 시행당시 위촉된 위원은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8조(위원회의 설치)</p> <p>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포항시시정조정위원회” 가 이를 대행 한다.</p>	<p>제8조(위원회의 설치)</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포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 회”.....</p>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09년 7월 27일

포항시 공고 제2009-851호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관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 및 본문에 인용된 상위법령 인용 조문 사항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과 조문 중 “기초생활보장 기금”을 “자활기금”으로 개정함(안 제명, 제1조, 제2조)
-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수정함(안 제1조, 제5조)
-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라. 기금관리공무원의 직위에 관한 사항을 개정 함(안 제11조)

3. 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자활기금의 적립) ①보장기관은 이 법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 할 수 있다.

②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이를 부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1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라 함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26조의2 (자활기금의 설치 <개정 2007.6.28>) ①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7.6.28>

②기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 복지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의3 (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6.28>

-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 5.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 6. 기금의 운용수익

② 국가는 기금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제42조에서 이동 <2007.6.28>]

**제26조의5 (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기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용·관리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 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③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7.5.11>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 ☎270-2935, FAX 270-2920)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를 “포항시 자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포항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포항시 자활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경상북도(이하 “도” 라 한다) 및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의 출연금
3. 도 또는 시 이외의 자(단체)로 부터의 출연금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5.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제3호 중 “영 제37조의 규정에” 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37조에” 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시장” 을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각호와”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 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로 하고,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을 “영 제3조의2에 의한” 으로 한다

제8조제4항제2호 중 “6월” 을 “6개월”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5%” 를 “5퍼센트” 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매 회계연도 마다” 를 “회계연도 마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당해연도” 를 “해당연도”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같은 조 제3항 중 “시의회” 를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 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 한다

- 1. 기금운용관 : 주민생활지원국장
- 2. 기금분임운용관 : 업무담당 부서장
- 3. 기금출납원 : 자활업무 담당주사

제12조제1항 중 “매 회계년도” 를 “매 회계연도”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명 포항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기금의 조성)</b>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상북도 또는 시의 출연금</li> <li>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li> <li>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li> <li>4.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li> <li>5.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li> <li>6.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li> </ol>	<p>제명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포항시 자활기금을 설치 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기금의 조성)</b> 포항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고보조금</li> <li>2.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li> <li>3. 도 및 시 이외의 자(단체)로부터의 출연금</li> <li>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li> <li>5.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li> <li>6.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li> </ol>

현 행	개 정
<p><u>른 이자 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u></p> <p><b>제3조(사업의 범위) (생략)</b></p> <p>1. ~ 2. (생략)</p> <p>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p> <p>4. (생략)</p> <p>5.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p> <p><b>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생략)</b></p> <p>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영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p> <p>③ ~ ④ (생략)</p> <p><b>제5조(지원대상)</b>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p>	<p>익금</p> <p>7. <u>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u></p> <p><b>제3조(사업의 범위) (현행과 같음)</b></p> <p>1. ~ 2. (현행과 같음)</p> <p>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u>영</u>” 이라 한다)제37조에 ..... .....</p> <p>4. (현행과 같음)</p> <p>5. <u>그 밖에</u> ..... .....</p> <p><b>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현행과 같음)</b></p> <p>② <u>포항시장</u>(이하 “<u>시장</u>” 이라 한다) ..... ..... .....</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b>제5조(지원대상)</b> ..... ..... .....</p>

현 행	개 정
<p>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p> <p>2. ~ 5. (생략)</p>	<p>.....각 호의 어느 하나와.....</p> <p>.....</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영 제3조의2에 의한.....</p> <p>2. ~ 5. (현행과 같음)</p>
<p><b>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b></p> <p>① ~ ③ (생략)</p> <p>④ (생략)</p> <p>1. (생략)</p> <p>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p> <p>3. (생략)</p>	<p><b>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b></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 .</p> <p>1. (현행과 같음)</p> <p>2. .... .....6개월..... .....6개월..... .....</p> <p>3. (현행과 같음)</p>
<p><b>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b>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 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 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p>	<p><b>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b> ① .....</p> <p>.....</p> <p>.....</p> <p>.....5퍼센트.....</p> <p>.....</p>

현 행	개 정
<p>있다.</p> <p>② ~ ③ (생 략)</p> <p><b>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b>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포항시 생활보장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1. (생 략)</p> <p>2. <u>당해연도</u>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p> <p>3. <u>기타</u>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 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u>시의회에</u>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p> <p><b>제11조(기금관리공무원)</b>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u>회계관계</u> 공무원을 다음과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u>주민생활지원국장</u>으로 하고, 기금분임 운용관은 <u>업무담당 부서장</u>으로 하며, 기</p>	<p>.....</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b>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b> ① .....</p> <p>.....</p> <p>.....</p> <p><u>회계연도마다</u> .....</p> <p>.....</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해당연도</u>.....</p> <p>.....</p> <p>3. <u>그 밖에</u>.....</p> <p>.....</p> <p>③ .....</p> <p>.....</p> <p>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 ..</p> <p>.....</p> <p><b>제11조(기금관리공무원)</b> <u>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과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u></p> <p>1. <u>기금운용관</u> : 주민생활지원국장</p> <p>2. <u>기금분임운용관</u> : 업무담당 부서장</p> <p>3. <u>기금출납원</u> : 자활업무 담당주사</p>

현 행	개 정
<p><u>금출납원은 자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u></p> <p>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u>매 회계년도</u> 출납폐쇄후 80일이내  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야 한다  ② (생 략)</p>	<p>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  <u>매 회계연도</u>.....  .....  .....  ② (현행과 같음)</p>

**고 시**

포항시 북구 용흥동 57-69번지 일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포항 용흥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포항시 건축과(054-270-3604)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 년 7 월 22 일

포항시 고시 제2009-66호

포항 용흥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정비구역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포항 용흥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분	정비사업의 구분	구역명칭	위치	면적 (㎡)	비고
신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포항 용흥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포항시 북구 용흥동 57-69번지 일원	36,070	

2. 정비계획 수립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사항 -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36,070	-	36,070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36,070	-	36,070	100.0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비 고
합 계		36,070	100.0	
택지용지	공동주택용지	32,180	89.2	
공공용지	소 계	3,890	10.8	
	완 충 녹 지	2,300	6.4	국도7호선변 (B=10m)
	교 통 광 장	460	1.3	1개소
	도 로	1,130	3.1	4개노선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유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대로	1	1	35	주간선 도로	19,170	유광동 구역계	흥해 곡강리 구역계	일반 도로		건설교통부 고시 제380호 (1967.5.24)	
변경	대로	1	1	35~38	주간선 도로	19,170 (235)	유광동 구역계	흥해 곡강리 구역계	일반 도로			일부구간 노폭확장
기정	중로	3	17	12	국지 도로	624	중로1-4	용흥동28 (소1-75)	일반 도로		포항시 고시 제98-242호 (1998.6.25)	
변경	중로	3	17	12	국지 도로	431	중로1-4	용흥동 42-13 (중2-116)	일반 도로			노선축소
신설	중로	2	116	18	집산 도로	83	용흥동 42-3 (중3-17)	용흥동 35-9 (중3-140)	일반 도로			노선신설
신설	중로	3	140	12	국지 도로	110	용흥동 40-6 (중2-116)	용흥동 17-3 (소1-75)	일반 도로			노선신설
신설	소로	2	405	8	국지 도로	10	용흥동 57-97 (대1-1)	용흥동 57-96	일반 도로			노선신설

※ ( )는 구역내 연장임

2) 광장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2	광장	교통 광장	북구 용흥동 57-84번지 일원	-	460	460		

3) 녹지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4	녹지	완충 녹지	덕수공원~용흥동 57-165번지 일원	3,900	증)1,620	5,520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공동이용 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주택법 및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마.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	비고
	명칭	면적 (㎡)	가구	명칭	면적 (㎡)						
신설	포항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36,070	I	I-1	32,180	용흥동 37일원	A	15% 이하	300% 이하	140m이하 (45층이하)	
				I-2	460	용흥동 57-84일원	B	-	-	-	
				I-3	1,475	용흥동 57-114일원	C	-	-	-	
				I-4	825	용흥동 57-149일원	C	-	-	-	
			도 로	1,130	-	-	-	-	-	-	
건축물 용도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6에 의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li> </ul>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계획시설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 - 교통광장</li> </ul>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완충녹지</li> </ul>							
주택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용면적별 세대수 : 전체 801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주택 : 총 732세대 : 9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5㎡초과(160세대): 20.0%</li> <li>85㎡이하(572세대): 71.4%</li> </ul> </li> <li>- 임대주택 : 총 69세대 : 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0㎡초과 85㎡이하( 43세대) : 5.4%</li> <li>40㎡이하( 26세대): 3.2%</li> </ul> </li> </ul> </li> </ul>								

바. 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환경보전 계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지를 조성하고, 토공사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절·성토를 구역내에서 최대한 활용토록 계획</li> <li>○조정 및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포장율을 최소화하여, 포장시 친 환경적인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침투의 용이성 제고</li> <li>○공사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저감하고,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li> <li>○저소음, 저진동 공사기기의 선정 및 경계부 가설방음판넬 설치</li> </ul>	환경보전 계획반영
재난방지 계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시행시 공사로 인한 인접지반의 침하방지를 위하여 굴착지역내 흙막이공을 설치 운영토록 계획</li> <li>○절토사면 발생시 친환경적 공법을 적용하여 시행토록하며, 우기시 토공작업을 지양하고, 가배수로, 침사지 및 산마루측구 등을 설치하여, 공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법면부의 지속적인 녹화와 관리</li> <li>○구역내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방화재료 등을 사용하는 등 방화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시설을 설치토록 함</li> </ul>	재난방지 계획반영

사.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교육환경 보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함</li> <li>○공사시 교육환경 장애요소(소음·진동·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li> <li>○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계획</li> <li>○해당 관할 교육청의 협의결과를 준수토록 계획</li> </ul>	

아.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자. 정비사업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의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차.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결정구분	구역 구분		가구또는획지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m <sup>2</sup> )	명칭	면적(m <sup>2</sup> )		합계	존치	개수	철거	
신설	용흥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36,070	-	36,070	용흥동 57-69번지 일원	124	-	-	124	

카.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구 분		기반시설면적		비 고
		면적(m <sup>2</sup> )	구성비(%)	
정비구역계		36,070	100.0	
기 반 시 설	계	3,890	10.8	
	완충녹지	2,300	6.4	국도7호선변 (B=10m)
	교통광장	460	1.3	1개소
	도 로	1,130	3.1	4개노선

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2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파.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하.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1998. 9월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입었으며, 사업대상지는 무질서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해 있고 해발 5~10m저지대로 공공시설이 불량하여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위험이 우려되는 지역

가. 기타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29	용흥 4구역 주택재개발	포항시 용흥동 57-69번지 일원	-	36,070	36,07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6항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36,070	-	36,070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36,070	-	36,070	100.0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유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대로	1	1	35	주간선 도로	19,170	유광동 구역계	흥해 곡강리 구역계	일반 도로		건설교통부 고시 제380호 (1967.5.24)	
변경	대로	1	1	35~38	주간선 도로	19,170 (235)	유광동 구역계	흥해 곡강리 구역계	일반 도로			일부구간 노폭확장
기정	중로	3	17	12	국지 도로	624	중로1-4	용흥동28 (소1-75)	일반 도로		포항시 고시 제98-242호 (1998.6.25)	
변경	중로	3	17	12	국지 도로	431	중로1-4	용흥동 42-13 (중2-116)	일반 도로			노선축소
신설	중로	2	116	18	집산 도로	83	용흥동 42-3 (중3-17)	용흥동 35-9 (중3-140)	일반 도로			노선신설
신설	중로	3	140	12	국지 도로	110	용흥동 40-6 (중2-116)	용흥동 17-3 (소1-75)	일반 도로			노선신설
신설	소로	2	405	8	국지 도로	10	용흥동 57-97 (대1-1)	용흥동 57-96	일반 도로			노선신설

※ ( )는 구역내 연장임

나) 광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2	광장	교통 광장	북구 용흥동 57-84번지 일원	-	460	460		

다)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4	녹지	완충 녹지	덕수공원~용흥동 57-165번지 일원	3,900	증)1,620	5,520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구	면적 (㎡)	획 지					비고
		획지 번호	위 치	용 도	면 적		
					㎡	%	
합 계	36,070				36,070	100.0	
I	34,940	I-1	용흥동 37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2,180	89.2	
		I-2	용흥동 57-84일원	교통광장	460	1.3	
		I-3	용흥동 57-114일원	완충녹지	1,475	4.1	
		I-4	용흥동 57-149일원	완충녹지	825	2.3	
도 로	1,130	-	-	-	1,130	3.1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	비고
	명칭	면적 (㎡)	가구	명칭	면적 (㎡)						
신설	포 흥 용 흥 4구역 주 택 재개발 정 비 구 역	36,070	I	I-1	32,180	용흥동 37일원	A	15% 이하	300% 이하	45층이하 (140m이하)	
				I-2	460	용흥동 57-84일원	B	-	-	-	
				I-3	1,475	용흥동 57-114일원	C	-	-	-	
				I-4	825	용흥동 57-149일원	C	-	-	-	
			도 로	1,130	-	-	-	-	-	-	-
건축물 용도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6에 의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li> </ul>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계획시설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 - 교통광장</li> </ul>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완충녹지</li> </ul>							

4. 교통처리계획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결과에 의함

5. 관계도면 : 게재생략